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2.

행 정 위 원 회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행정 위원 회]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1년도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8일간)

3. 감사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2호
(감사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재정국 소관, 보건소 소관)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부위원장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 전문위원 · 사무국직원 ·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D-1		영등포구청 (제1감사장)	감사담당관	-현황보고 및 청취 -서류확인 -개별감사 -현장확인
D-2			행 정 국	
D-3			재 정 국	
D-4			보 건 소	
D-5				
D-6	오전		수감사항 정리	- 각 위원별
	오후		공개질의, 답변	- 종합평가 - 강 평

※ 토요일, 일요일 : 지역 의정활동 등

6.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부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7.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	2011. 11.25 (금)	권영식	[원산지 표시 점검원 부족 건] 점검대상 업소 수에 비하여 점검반이 적게 편성됨으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또한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점검반 3인 1개조 2개반 운영으로 7,296곳의 업소를 점검하기에는 적은 인원구성이므로, 적정인원을 투입하여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하여야 하고, 수치로만 하는 전시성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지도·계도 점검의 원칙을 살리는 구성을 하기바라며, 구민의 건강도 지키고 음식문화의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2011. 11.25 (금)	김용범	[인터넷 민원 (구청장에바란다) 형식적인 처리]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터넷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구청장에 바란다”의 민원인에 대한 답변이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원인의 불만이 급증하고 구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민원접수 후 관련부서에서 실태를 파악후 구체적이고 향후 계획까지 상세히 답변하여 민원인에 대한 만족감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답변전 내용을 사전검토후 답변토록 하고, 답변에 대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에 대하여 능력을 배양시킬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2011. 11.25 (금)	김용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의 형식적인 운영]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의 활동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동별 활동의 편차가 심하여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일정기간 물량위주의 활동 실적을 평가후 사업 시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임.
4	2011. 11.25 (금)	김용범	[자체감사 기능의 부실] 동감사 및 구청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지적사항 또한 실무의 기초적인 사항이 지적되는 등 자체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전직원에게 행정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무에 응용토록 하고, - 주관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시정해나가야 할 것임.

5	2011. 11.25 (금)	김용범	[계약심사제 업무수행의 미흡] 발주부서에서 기초산출조서 작성시 관련 회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심사하였고, 이로인한 절감액을 실적으로 책정하는 등 사실상 업무추진실적이 부풀려져 있어 계약심사제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고 전반적으로 계약심사 업무에대한 실무가 미숙함.	- 전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 교육실시와 계약심사담당자의 전문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6	2011. 11.25 (금)	김용범	[조직개편과 인력운영의 무계획성] 조직개편시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의 운용을 위하여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을 실시하는등 보다 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조직 개편을 하여야 하나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하면서 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사람들의 협의에 의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므로써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부서에서는 인력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나 시의 위임사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동인력운영 또한 동직원의 발령시 해당 주관부서 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으로 인하여 동주민센터마다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조직개편시에는 TF를 구성하여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등을 실시하고 최대한 사무의 계량화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 국가나 시위임사무, 자체신규사업등 해당부서와도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 동인력 인사시에도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개선.

7	2011. 11.28 (월)	김용범	[창의구정 실현의지 미흡]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지와 노력이 매우 미흡함. 특히, 다양한 정책개발과 집행에 필요한 기능과 사업들인 정책회의, 공무원제안 및 주민창안, 주민 불편 행정규제개혁 및 각종 위원회의 활동 실적이 대체적으로 부진하여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 급변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확고한 신념으로 관련된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각 기능들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창의구정을 실현하여야 할 것임
8	2011. 11.28 (월)	김용범	[위임사무관리 소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행정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여 행정사무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최근 3년간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 위임된 사무가 14개부서 35건이 있었으나 해당 주관부서에서는 인력조치 등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신속히 수행하지 않아 특정부서에서 업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	- 그간 위임된 사무의 1인당 일일업무 처리량을 객관적으로 분석 계량화 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수행하고 향후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된 사무량을 계량화하여 주기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무위임만 하고 인력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나 시에도 구청장 협의회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임.
9	2011. 11.28 (월)	김용범	[위원회 관리 소홀] 원활한 구정운영과 창의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여 재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최근2년간 위원회 회의개최 전무 15개위원회, 1회개최:13개위원회, - 최근1년간 전무 24개위원회, 1회개최:23개위원회 일부 법적의무사항이라 어쩔수 없다는 논리로 방치하는 것은 창의구정 실현에 역행하는 처사임.	- 법적의무사항으로 부득이 설치된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법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을 것임. 따라서, 부진한 위원회를 신속하게 재정비하여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는 활동으로 창의구정 실현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0	2011. 11.28 (월)	김용범	[조개가식 수의계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미수행과 예산낭비 초래]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한 주민자치센터 수리비 20개동 329,297천원에 대하여 연초에 이를 일괄 발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면 예산을 최소한 13%이상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하 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회계규정을 적절히 이용하고, 업무상 편의와 시공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뢰한다는 명목으로 자치센터별로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에도 계약담당 부서로서 이를 적절히 지도하지 못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음.	- 동일사안이나 유사사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
11	2011. 11.28 (월)	김용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구정에 대한 불신 초래]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구청을 비롯한 관과 상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아 아직도 전통시장 상인들은 크고 작은 현안을 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로 전통시장을 살려줄 것을 기대를 하고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모아 서명한후 구청에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은 업무량이 많아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별 사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가서 직접 해결하라는 식(예:시장내의 공중화장실 유지비 지원건 - 구 청소과)의 업무자세는 업무 주관부서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로 구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 이는 한 부서의 사례에 불과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와 대책이 마련되어 구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함.

12	2011. 11.28 (월)	김용범	[CCTV 구매방법 개선] 현재 구청의 CCTV 관리는 U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이 CCTV의 신규구매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구매하고 있어 대부분 행정직이 구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행정직의 잦은 전보로 전문성부족과 기기에 대한 기술력 부족으로 기기 성능에 대한 변별력과 기기운용에 대한 지식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기를 구매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매우 큼.	- 기기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력이 나은 전산정보과 에서 일괄 구매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적문제 등 제반 우려감을 해소하여 장비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
13	2011. 11.28 (월)	김용범	[지방세 부과취소 및 과오납환급 등 지방세 부과 업무의 정확성과 신중성 결여] 최근 2년간 지방세중 구세를 부과하고 취소한 건수가 4,620건에 599,600천원, 잘못 부과하여 환급하여준 과오납 환급 건수는 22,001건에 3,144,000천원으로 이는 과세면적등 과세자료 착오, 기납부자이중납부, 재산세사후감액, 타관할 물건변경, 폐업후 인허가 미반납, 납세자 착오신고 납부등으로 이중 납세자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나 부과공무원의 업무상 착오 또한 상당히 많으나 해당 납세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업무상 과오를 범한 직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책도 뒤따르지 않고 있어 쉽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업무상 잘못을 범한 직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해당 납세자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부과취소나 과오납환급의 착오건수를 줄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

14	2011. 11.28 (월)	김용범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사업과 새로운 트렌드에 따른 건강관리사업 추진의 미흡] 보건소 업무중 90%이상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강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지역실정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차등 편성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상부기관 지침과 자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획일적인 예산편성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영양플러스사업)예산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추경예산으로 이를 해소한바 있으며, 또한, 우리구 보건소 이용자중 60세이상이 40%, 50대이상 53%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사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기후변화나 삶의질 향상에서 오는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업 발굴 등 이에 따른 대응책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가 많은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등 보다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50대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거나 기존사업에 예산을 증액편성하여 보장하고, 또한 기후변화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새로이 부각되는 질병이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질병으로 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함.
15	2011. 11.28 (월)	김화영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2011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은 총6,696명으로 이는 구정 복지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구정업무 수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대부분으로 기업체와 연결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겨우 11명으로 형식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관내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관내 및 인근 자치구의 기업체와 매치된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이 되어 청년실업 해소에 일조를 해야 할 것임.
16	2011. 11.28 (월)	김화영	[국.시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세입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국.시비 사업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는 국.시비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발굴 실적이 저조함.	-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국,시비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시비지원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17	2011. 11.29 (화)	권영식	[영롱이 자전거 순찰] 일반 주민이 자전거로 지역순찰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기란 쉽지가 않으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역적 여건 등으로 한계가 있음.	- 자전거 순찰이 잘 되는 지역은 존속 가능하지만 활성화가 안되는 지역은 자율방범대, 학교지킴이 등과 연계하여 지급된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도 모색하여야 함고, - 중단되어 자전거 자체를 방치해두고 있는 지역은 구청 자산으로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들의 교통용으로 지급하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단거리 이동용으로 무료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람.
18	2011. 11.29 (화)	권영식	[마을 만들기 사업] 일회성 사업으로 연속성이 없으며, 행사성 사업으로 잔치를 한번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마을을 가꾸고 특성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많음.	- 선정사업을 보면 일회성 사업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공연, 놀이마당 등 누구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지속성과 테마가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모든 주민이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19	2011. 11.29 (화)	권영식	[마을기업 관리] 마을기업 선정과정에 자치구의 심의가 없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시설과 고용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취지에 어긋나며 일부 관리·감독이 소홀한 면도 있음.	- 마을기업 선정시 사업성과 고용창출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고, 선정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차년도 예산 지원시에는 취지에 맞게 경영을 하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지원하기를 바람.
20	2011. 11.29 (화)	김용범	[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발주의 지연과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및 일부업체의 특혜의혹] 관할 20개동주민자치센터 청사 보수공사 (329,297천원)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추진의 편의성 이유로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예산 약20,000천원을 낭비하였고 특정업자 밀어주기라는 오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구현에 역행하였으며, 5개동 77,000천원의 동청사환경개선 사업비를 2011년도 추경에 편성 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2달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의 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사후 부작용등을 면밀히 검토한후 이에 알맞은 계약조건을 마련하여 입찰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실현

21	2011. 11.29 (화)	김용범	[마을만들기사업 선정심사의 객관성 결여 및 컨설팅비 예산낭비] 마을만들기사업 선정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의 편차가 너무 심하여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컨설팅시 컨설턴트들의 전문성부족과 사전준비부족으로 형식적인 컨설팅이 되었고 상부에서 지시하여 어쩔수 없이 추진하다보니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낮고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단발성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고 주관부서에서는 컨설팅에 참여를 하지않고 사후평가만 하면 된다는식의 주관부서의 무책임성이 있음.	- 유사한 사업을 추진시에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평가시스템을 적용하고 심사위원과 컨설턴트 선정 또한 우리구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22	2011. 11.29 (화)	김용범	[자치회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지 미흡]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행정서비스 질의 수준도 함께 향상되어야 함에도 이에 부응하는 자치회관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실적이 전혀 없고,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	- 각동 실정에 맞는 자치회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개발 하여 보급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23	2011. 11.29 (화)	김용범	[동주민센터 지도 감독 소홀] 동주민센터 직원의 동업무 수행에 필요한기초 지식 등이 부족하여 실무에 있어 업무처리 미숙 등이 자체감사에서 반복으로 지적 되고 있는바 이는 동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소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 정기적으로 실무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24	2011. 11.29 (화)	김용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부적절] 새마을지도자단체의 사회보조금 집행시 선진지견학 (3,574,000원), 농촌일손돕기 (2,160,000), 한마음수련회(8,384,340원)를 11.2~11.4까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므로서 보조금을 일시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있음.	- 보조금정산 평가시에 합목적성, 제반규정이행 실태등을 검토 분석하여 2012년도 보조금 지원시 이를 반영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
25	2011. 11.29 (화)	김용범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지원기준의 객관성 결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시 시,구비의 지원은 각종목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인바, 시나 구지원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종목별 지원 편차가 (7,200천원 ~ 2,700천원) 심하고, 자체예산 조달 또한 종목별 편차가 심함 (야구-9,165천원,검도,족구-0) 이는 시나 구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단체를 운영하고 대회를 개최하므로서 자생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단체장의 의지나 이해관계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등 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종목별 자생력 증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종목별 참여인원 및 활동상황, 자체예산조달 상황등 제반여건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체경비로 단체를 운영하거나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
26	2011. 11.30 (수)	권영식	[선택적복지 포인트 배정문제] 배우자 포인트 제도는 직원 중 결혼생활자에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다수의 미혼 및 1인세대로 거주하는 직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	- 공무를 보는 직원의 배우자가 어떤 이유로 포인트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되며, 명목에 문제가 된다면 알맞은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포인트 배정을 받지 못하는 미혼 및 1인세대 직원들에게도 포인트 배정을 하여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혜택받는 복지제도가 되기에 시정을 요구함.

27	2011. 11.30 (수)	권영식	[구민체육센터 편의시설] -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중 유아를 동행한 구민들이 맡길 곳이 없어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많음. - 셔틀버스 운전원의 75%가 타지역인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으며,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저해됨.	- 젊은 여성분들의 심신의 건강은 가정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밝게하는 근간으로 활동에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또한 인구증가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아보호소 설치를 요구함. -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복지정책에도 합당하므로 개선이 요구됨.
28	2011. 11.30 (수)	김용범	[지역실정에 맞는 집약적인 교육정책 필요] 우리구의 학생수가 점차감소하고 있는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명문고가 없어 학군 좋은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있는 현상으로 우수고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나 한정된 예산에 우수교육성에 대한 시책의 세부사업이 너무 방대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교육청 업무와의 영역이 분명치 않음.	- 우수교육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어진 예산에 알맞는 사업을 집약하여 추진하고 - 일반직공무원들이 교육시책을 개발하는데는 한계 있어 교육분야 전문가,학부모,교사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 목적 달성.
29	2011. 11.30 (수)	김용범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사용 실태 부적정]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세금계산서를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였고 지출절차 또한 불투명하게 사용하여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자금 사용 하듯 사용하고 정산하여 무단사용의 의혹이 있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이에 적적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원금액 또한 타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감사담당관등 사정전담부서에서 일제감사를 실시, 제반문제점을 돌출하여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토록 지도. - 각종 타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금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30	2011. 11.30 (수)	김화영	[민원많은 동주민센터의 근무기피현상으로 업무수행 애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환승역 부근(당산2동,문래동)이나 회사밀집지역 (여의동)의 동주민센터는 민원이 과다하고, 근무평정을 구청근무 직원위주로 우수한 평정을 주다보니 근무의욕을 상실하여 동주민센터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일선 동장들의 애로가 많음	- 민원이 많은 동주민센터와 격무부서에 대하여 승진에 필요한 일정한 인센티브(가점 등)를 부여하고 동주민센터 배치인력 또한 신,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인사발령을 하고 근무평정을 구와 동간의 일정배율로 배분하므로서 제반 문제점을 해결
31	2011. 11.30 (수)	신현도	[현장답사의 적절성] 직원 한마음 훈련 및 하계휴양소 장소 선정 등 각종 행사 실시전에 시행하는 현장답사가 필요이상으로 많음.	- 부서별 현장답사시 사전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직원의 직접 답사는 최대한 줄여 필요이상의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32	2011. 11.30 (수)	신현도	[수의계약 관련] 각 과별 수의계약 건을 분석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볼 수 없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과별 수의계약을 보면 특정업체들만이 서로 교차하면서 비교견적을 해주고 있으며, 어느 부서는 현재 폐업된 회사도 비교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있음. - 수의 계약시 업종에 맞추어 발주하기 바라며, 관내 여러 업체에서 구정 사업(물품,공사,용역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람.
33	2011. 11.30 (수)	신현도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이 각 학교별로 공평하게 지원되지 않고 특정학교들에 편중지원되고 있음.	- 한정된 교육경비 보조금이 어느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추어 지급될 수 있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34	2011. 12.1 (목)	윤동규	[국·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관리 부적정] 국·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금에 대하여 동산 및 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파악하여 적기에 압류조치를 해야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 국·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35	2011. 12.1 (목)	윤동규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축제식, 소모성으로 형체도 없이 마을 체육대회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최초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함.	-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36	2011. 12.1 (목)	권영식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적정성이 요구되며, 규정에 맞지 않는 영수증 처리 및 지출금액과 영수증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적절한 지급과 사용 규정에 맞는 지출을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 무단지출이나 과잉지출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규정에 맞는 영수증 첨부을 하지 않은 경우나 영수증도 없이 지급하는 단체에는 보조금 지급에 규제가 있어야 함.
37	2011. 12.1 (목)	권영식	[반장보상품 관련] 반장보상품 선정에 의혹을 갖게하는 잘못된 절차가 있으며 특정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변칙된 선호도 조사를 하였고, 계약서류에 날씨가 미기재되거나 신고된 인감을 사용치 않은 것도 발견됨.	- 규정에 의한 선정으로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갖지 않는 원칙에 의한 투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누구의 영향력에 선정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은 구청 행정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관계 서류에 날씨가 기재되지 않거나 진행상 절차가 바뀐 것도 있으며, 신고된 인감이 아닌 것을 사용하였고,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가 요구되며, 의혹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어떠한 압력이나 권유가 있더라도 철저히 배재되어야 함.

38	2011. 12.1 (목)	고기관	[관용차량 보유현황]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량대수가 158대이다. 그러나, 차량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조달청 기준표와 우리 구 규칙(2009. 4. 9 개정)이 불일치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해가 바뀌어도 친환경적으로 차량보유 현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	- 차량내구연한에 대한 업무가 획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 규칙을 조달청 기준표에 맞게 개정할 것. 예) 조달청기준표 우리구 규칙 화물차 : 7년 → 6년 승 합 : 7년 → 6년 - 우리 구 전체 보유 차량 중 친환경적 차량이 (LPG17대, CNG14대)로 이는 전체 차량 대비 비율이 2009년 20.5%, 2010년 20.75%, 2011년 19.6%로 나타나고 반면 경유 차량 보유 비율은 2009년 60.87%, 2010년 60.37%, 2011년 62%로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차량으로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개선할 것.
39	2011. 12.1 (목)	고기관	[동 행정 품질평가] 동 행정을 평가하는 평가 방법 (8개 분야)이 해가 바뀌어도 큰 변화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있어서 지나친 점수부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짐.	- 현재 8개 분야에 대해서 기준표를 정해놓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어느 부분에 한해서는 (예)00부문 30점, 00부문 5점, 00부문 3점 등 평가 항목 간 편차가 너무나 극심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해마다 큰 변화 없이 반복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서도 동별로 안고 있는 간접 여건(지리적, 환경적요인)을 감안하여 변화된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할 것.
40	2011. 12.1 (목)	고기관	[예산 전용] 영등포 아카데미 강사비를 2011년 3월 11일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예산 운용이라 생각됨.	- 예산 전용 건이 2010년 30건, 2011년 13건으로 줄어들긴 하였으나 2011년도 3월 11일 집행된 영등포 아카데미 강사비 전용은 민간 위탁에서 구청 직접 섭외 방법을 택한 사안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데에는 이해할 수 있으나, 예산을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시점인 2010년 12월에 벌써 예산 편성 방법 잘못으로 구청장 방침에 의하여 이러한 사항이 발생됨은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예산 운용이라 생각되어 차후 이러한 방법으로의 예산 전용이 없도록 할 것.

41	2011. 12.1 (목)	고기관	【위원회의 정상운영】 업무 분장에 따른 직제가 조례에 의해서 개편된 이후에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를 무시하고 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2011년 7. 18일 구의회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어 소관부처를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 시 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제 변화에 따라 올바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할 것.
42	2011. 12.1 (목)	고기관	【아트홀 운영 현황】 - 2010년 · 공연장 134일 (구청 78일, 대관 56일) · 전시실 203일 (구청 163일, 대관 40일) - 2011년 현재 · 공연장 113일 (구청 69일, 대관 44일) · 전시실 206일 (구청 186일, 대관 43일)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음.	- 기존 영등포 구민회관을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 하였는데 현 운영 실태를 보면 구민을 위한 대관보다는 우리 구청의 업무 연장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공연장은 공연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많은 구민들이 바라만보는 시설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구민들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 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43	2011. 12.1 (목)	고기관	【주택가격 부과 이의신청】 주택가격 부과가 비준표[건물비준표, 토지비준표, 형상, 방위, 도로접변, 고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 3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그중 심의에 의하여 3건을 조정하였음.	- 우리구 관내에는 약 2만호에 이르는 주택이 있는데, 올해 우리구 평균 상승률이 토지 1.46%, 주택가격 1.56%를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을 한 30건의 결정된 주택가격을 분석해 보면 주변 주택의 부과기준과 편차가 심한 건수가 있어 차년도부터는 인접지역과 주택가격 부과가 비준표(하단 참조)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 지기를 바람. ※주택가격 부과 비준표 · 건물 비준표 : 건물구조, 지붕, 옥탑지하부속 · 토지 비준표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분 · 기 타 : 형상, 방위, 도로접면, 고저

44	2011. 12.1 (목)	오인영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범위 확대]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선택의 폭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하여 최적의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식사-케이크떡 등은 사용이 가능한 반면 정작 필요한 건강식품은 제한하는 등(인근 구로, 양천, 금천구 등은 가능)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복지포인트 한도 안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제한범위를 최소화하여 더욱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45	2011. 12.1 (목)	오인영	[민원처리 최종 결과(내부, 외부)까지 확인 후 민원인에게 통보요망] 각종 민원처리 함에 있어 외부기관 소관업무는 위탁 처리한 사항만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결과(특히 외부기관 위탁시)는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민원해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최종 결과까지 통보해 주고 장기간 소요시에는 중간결과를 통보하는 적극적인 민원해결 제도개선이 필요함.
46	2011. 12.1 (목)	오인영	[구민 감사관 현장점검 철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정 공사액 이상의 관급공사는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과 구민감사관제를 활용하여 현장 점검시 공정에 의한 단계별 점검을 통하여 부실 또는 미흡하게 시공한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정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준공 시에 점검을 하는 등 실기로 인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일각에서는 관급공사는 일명 장님공사 또는 하자투성이 공사로 전락되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단계별 공정에 대한 점검일정을 정확히 준수하여 구민감사관 전원이 이상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후에 다음 공정으로 이어 지도록 하면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47	2011. 12.1 (목)	오인영	[통반장 일간지 공평하게 구독 보장] 서울시 5개구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율이 100%이나 우리구는 34%정도(구순위 17위)로 25개구 평균 51%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반장은 일시에 전체적으로 구독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전체 반장들이 공평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또한, 통반장 구독 증편요구 동은 10개동(당산1동, 당산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1동, 신길4동, 신길5동, 대림1동, 대림3동)에 이르고 있음.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반영하고 반장의 사기진작 등을 감안하여 평균 보급률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48	2011. 12.1 (목)	오인영	[외국인 지원과(가칭) 신설 필요] 「서울국제금융센터」의 개장으로 '아시아의 월스트리트'로 여의도의 랜드마크이며 서울을 동북아 경제 및 금융 중심지로 도약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루 평균 2만 5천 여명이 상주하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편리한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하여 관내 거주하는 조선족 등 외국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지난 7월14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외국인 주민 3만명 이상 또는 주민등록인구의 10%가 넘는 우리구 등 지자체에 정원 12명의 외국인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신설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음. - 우리 구 정주 외국인수 : 총 50,531명 (국적 미취득자 42,337명, 국적취득자 6,207명, 자녀 1,987명) - 우리 구 주민등록인구 406,833명 대비 : 12.4%	- 사무관 이하 공무원 정원 증원과 국비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라 판단되며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꼭 필요한 부서이므로 신속한 신설이 요구됨.

49	2011. 12.1 (목)	오인영	【관내 방법용 CCTV 확대 설치】 날로 급증하고 있는 치안 문제로부터 주민의 안정된 삶의 보장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방법용 CCTV를 더욱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 검거 및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영등포경찰서 간 관제센터가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50	2011. 12.1 (목)	오인영	【예비비 사용 부적절】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위한 제도로 집행부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예비비 사용 목적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전 예측 할 수 있는 사업은 본 예산이나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은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구의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사용하여야 적정하다고 사료 되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예비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51	2011. 12.1 (목)	정선희	【규칙 정비 미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영등포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 분장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자료로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부서 업무 파악에 혼선을 줌. 예)고위정책과정 업무 추진 (교육지원과) : 2008년도에 없어진 사무인데도 현행 규칙에 존치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나 규칙 등도 일제 정비를 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
52	2011. 12.1 (목)	정선희	【영등포아카데미 운영】 현재 운영중인 영등포아카데미 강좌의 참석인원 현황을 분석해보니 매회 일정한 수의 동일인들이 매번 참석하고 있음.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구민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결국 일부 주민만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음.	- 기존 홍보방식을 재검토하여 다수의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강좌실시 장소를 매회 동일한 장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지역별로 나누어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순회 실시를 한다면 참석하고 싶지만 장소에 따른 거리적으로 구애받고 있는 구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53	2011. 12.1 (목)	정선희	[각종 체육대회 지원 관련] -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회의 규모와 참가 인원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일 지원되고 있음. - 또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함.	- 대회의 규모, 활성화 정도, 인원 등에 비례해서 각종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됨. -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54	2011. 12.1 (목)	정선희	[한방진료실 운영] 한방진료실은 3대의 치료대가 있으며 환자의 진료시간이 30분이상 소요되어 하루 이용 가능한 수가 50여명임. 이용을 하려는 구민이 많아 대기일수 또한 10일정도 걸려서 사전예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협소한 한방진료실의 규모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려면 여건이 나아지기 전까지라도 치료받는 대상을 모든 구민이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55	2011. 12.1 (목)	정선희	[보건분소 운영에 대하여] 직원이 자주 바뀌어서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와 근무자들간의 신뢰성이 약화되어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물리치료사나 방사선기사의 인건비가 타구(1일 6만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근무 성적이 뛰어난 기간제 및 공공근로자들에 한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기술서비스를 요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6	2011. 12.1 (목)	정선희	[향토문화재 보존 및 발굴 역사 보존 대책마련] 지자체간 비교에서 우리 구 관내 문화재 발굴 및 등재 현황이 현격히 떨어져 있어 이의 개선을 요함. 또한, 우리 구 관내 역사 보존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후대에게 영등포의 변화한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리 구 관내에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보존 대책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한다. - 우리 구 각 지역 내에 현존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통하여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 우리 후대들에게 시대별로 영등포의 변모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록물을 준비한다.

57	2011. 12.2 (금)	김화영	[신길시장 재건축공사 현장 안전사고 후속조치 관련] 신길시장 재건축 공사 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정전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피해 신고 접수창구 필요	- 4개 동, 만여 가구가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 신고 창구 설치가 미흡 - 동 주민센터 등에 피해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보상 절차 안내
58	2011. 12.2 (금)	신현도	[구 행복소식지 제작, 배부 현황] 우리 구 인쇄홍보매체인 “행복소식지”의 보완과 개선방안	- 기획 연재 혹은 기획기사물의 부족 - 대중교통, 주거난 해소대책, 등록금 고통해소 정보 등 사회 이슈로 되고 있는 현안들이나 관내 사건, 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정보제공 등 주민실생활에서 욕구가 높은 정보 제공으로의 개선 필요 - 11만부에 이르는 행복소식지의 주 전달체계인 통장들에 대한 수당의 개념 반영 필요
59	2011. 12.2 (금)	오인영	[마을기업 선정 및 지원 감독 실태] 구 선정 3개 마을기업 선정의 타당성 및 선정 이후 사업목적에 맞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하였는지의 여부	-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과 서민층의 틈새시장 진입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 심의 및 선정 과정 부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준한 회계처리 미흡, 부실운영 우려, 이중 개 기업은 구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욱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필요 - 추후 확대될 마을기업 사업의 적절한 지원과 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필요함. - 2012년 1월까지 현장 실사 후 보고서 제출 요구